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산 립 보 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(안)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현수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「산림보호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('20.2.18.)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,
- 나무병원의 종류(1종·2종)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현행 규정상 등록취소 및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. 이에 따라,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 등 불필요한 시간·비용이 소모되어 나무병원의 변경등록에 해당하는 항목에 '나무병원의 종류'를 추가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사유 추가(안 제12조의9제2항제4호)

- 나무병원의 변경등록에 해당하는 사유에 '나무병원의 종류'를 추가

나.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9조의2)

- 산불재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(12명 내외) 및 임무(야간산불, 도시 및 험준한 산악지역산불, 광역단위 산불진화, 진화훈련 및 산불예방활동 등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

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9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나무병원의 종류

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2(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1개조 12명 내외로 구성한다.

②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야간산불, 도시 및 험준한 산악지역 산불진화
2. 시·도 등 지역 구분없이 광역단위 산불진화
3. 산불진화 장비를 활용한 지상진화 및 산불예방활동
4. 산불진화장비 유지·관리 및 산불재난 교육·대응훈련 실시
5. 그 밖에 산림재난 또는 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9조의2는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12조의9제2항제4호는 2023년 6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의9(나무병원의 등록 등) ① (생략) ② 법 제21조의9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 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2조의9(나무병원의 등록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나무병원의 종류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<u>제29조의2(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1개 조 12명 내외로 구성한다.</u> <u>②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야간산불, 도시 및 험준한 산악 지역 산불진화</u> <u>2. 시·도 등 지역 구분없이 광역 단위 산불진화</u> <u>3. 산불진화 장비를 활용한 지상 진화 및 산불예방활동</u> <u>4. 산불진화장비 유지·관리 및 산</u>

불재난 교육·대응훈련 실시

5. 그 밖에 산림재난 또는 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076